



KAS-SR-001 : 2021

GLOBALG.A.P. IFA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한국제품인증기구

Korea Accreditation System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MOTIE, Korea

GLOBALG.A.P. IFA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서론

이 규정은 ISO/IEC 17065를 기준으로 FoodPlus GmbH가 운영하는 「GLOBALG.A.P. IFA(농장종합보증, Integrated Farm Assurance, IFA)」(V5.2) 인증스킴에 대해 인증을 실시하는 제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기술한 것이다.

이 규정은 KS Q ISO/IEC 17065, 한국제품인증기구(영문명칭은 “Korea Accreditation System”이며, 약어로 “KAS”라 한다. 이하 “인정기구”라 한다)의 운영요령 및 GLOBALG.A.P.(이하 “글로벌갭”이라 한다)의 General Regulations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1. 적용범위

1.1 이 문서에서는 GLOBALG.A.P. IFA (V5.2) General Regulations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증기관 인정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1.2 GLOBALG.A.P. IFA 인증스킴의 모든 부문 범위 및 제품 하위 범위에 대한 인정기구의 인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인증기관이 따라야 하는 규정 및 지침과 인증기관이 입증하여야 하는 심사/시험/검사 기준에 이 절차를 적용한다.

2. 인용문서

2.1 KS Q ISO/IEC 17000:2017 Conformity Assessment - Vocabulary and general principles (적합성 평가 - 용어와 일반원칙)

2.2 KS Q ISO/IEC 17065:2014 Conformity Assessment - Vocabulary and general principles (적합성 평가 -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2.3 KAS-R-002 :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2.4 KAS-R-003 :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2.5 GLOBALG.A.P. IFA (V5.2) General Regulations Part I: General Requirements

2.6 GLOBALG.A.P. IFA (V5.2) General Regulations Part II: Quality Management System

2.7 GLOBALG.A.P. IFA (V5.2) General Regulations Part III: Certification Body and Accreditation Rules

3. 용어 정의

- 3.1 이 문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관련 정의 또는 다음의 정의를 따른다. 다만, 이 문서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표준화 및 관련활동-일반어휘(KS A ISO/IEC Guide 2), 적합성평가-용어 및 일반어휘(KS Q ISO/IEC 17000),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AS-R-002), GLOBALG.A.P. IFA (V5.2) General Regulations Part I Annex I.4: 용어정의를 적용된다.
- 3.2 “한국제품인증기구”란 법률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의거 제품인증기관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기구를 말한다.
- 3.3 “KAS 공인제품인증기관”이란 한국제품인증기구로부터 제품인증에 대해 인정을 획득한 공인제품인증기관을 말한다.
- 3.4 “신청기관”이란 한국제품인증기구로부터 인정평가를 받기 위해 인정신청을 한 기관을 말한다. 다만, 이 용어는 이 요령에서 사용될 때마다 별도로 기술되지 않는 한 국내 및 해외에 소재한 기관 모두에 해당된다.
- 3.5 “FOODPLUS GmbH”라 함은 GLOBALG.A.P. IFA 인증스킴의 문서에 대한 법적 소유자로서 GLOBALG.A.P.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3.6 “생산자(Producer)”라 함은 GLOBALG.A.P. IFA 인증스킴의 생산과정 및 인증범위와 관련된 제품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3.7 “생산지(Production site)”라 함은 동일한 투입물(용수, 작업자, 도구, 등)이 사용되며, 단일 법인이 임대 또는 소유하면서 전적으로 관리하는 생산지역을 의미한다.

3.8 “생산자 단체(Producer Group)”이라 함은 GLOBALG.A.P. IFA 인증스킴을 신청하거나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생산자의 집단으로 GLOBALG.A.P. IFA Regulations에 따라 등록된 인원 100%의 내부 관리 및 내부절차가 수행되고 있고 인증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관리 책임자를 보유한 집단을 의미한다.

3.9 “무결성 프로그램(Integrity Program)”이라 함은 GLOBALG.A.P. 사무국에서 직접 글로벌갭 인증기관 역량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무실 평가, 현장입회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4. 인정 범위 - GLOBALG.A.P. IFA

4.1 GLOBALG.A.P. IFA 인증스킴에 대한 인정범위는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AS-R-002)" <별표1>의 인정분야에 추가적으로 4.3항의 글로벌갭 IFA 범위 및 4.2항의 옵션범위를 적용한다.

4.2 옵션 범위

4.2.1 옵션 1

(1) 개별생산자 인증

: 신청하는 단일생산지를 경작하는 생산자

(2) 품질관리시스템 미적용 복수생산지 개별생산자 인증

: 복수생산지를 가진 개별 생산자 혹은 하나의 조직으로 품질경영시스템(QMS) 적용하지 않는 생산자

(3) 품질관리시스템 적용 복수생산지 개별생산자 인증

: 복수생산지를 가진 개별 생산자 혹은 하나의 조직으로 품질경영시스템(QMS) 적용하는 생산자

4.2.2 옵션 2

(1) 품질경영시스템(QMS)을 적용하여야 하는 법인 생산자 집단

4.3 GLOBALG.A.P. IFA 범위

4.3.1 농장일반(All Farm Base)

4.3.2 작물일반(Crop base)

(1) 과채류(Fruit and Vegetables)

(2) 화훼(Flowers and Ornamentals)

(3) 작물 번식재(Plant Propagation Material)

(4) 곡물(Combinable Crops)

(5) 차(Tea)

(6) 홉(Hops)

4.3.3 축산일반(Livestock base)

- (1) 낙농업(Dairy)
- (2) 소와 양(Cattle and Sheep)
- (3) 송아지(Calf and Young Beef)
- (4) 돼지(Pigs)
- (5) 가금류(Poultry)
- (6) 칠면조(Turkey)

4.3.4 수산양식 일반(Aquaculture base)

5. GLOBALG.A.P. IFA 인증스킴 인정을 위한 인정기구 운영사항

- 5.1 신청기관의 제출서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신청 범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정신청확인서를 신청기관에 발행하여야 한다.
- 5.2 인정기구는 GLOBALG.A.P. IFA 범위(농산물, 축산물, 수산양식)에 대한 최초 평가 시, 신청기관이 신청한 각 범위에 대해 최소 1번의 현장입회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5.3 인정기구는 신청기관이 신청한 범위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 심사 입회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만 옵션 2(옵션 1 품질경영시스템 적용 복수생산지 생산자 인증 포함)에 대해 인정할 수 있다.
- 5.4 인증기관이 인정범위 확대 신청을 한 경우, 인정기구는 별도의 현장입회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나, 확대 범위와 관련된 인원 역량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여야 한다.
- 5.5 인정기구는 최대 4년에 1회 인증기관에 대한 현장입회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입회평가는 인증기관의 옵션 2 또는 품질경영시스템 적용하는 복수생산지 옵션1 인증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현장입회평가의 빈도가 증가하는 경우, 인정기구는 이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 5.6 인정기구는 글로벌갭 extranet을 통해 인정기구와 관련된 불만관리시스템 및 인증기관에 대한 무결성 프로그램 기록을 매년 검토하고, 가능한 경우, 이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정기구는 글로벌갭 사무국에서 실시하는 무결성 프로그램의 평가에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글로벌갭 사무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5.7 인정기구는 글로벌캡 사무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증기관 인정평가 보고서와 가장 최근의 인정 평가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에게 이에 대한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5.8 인정기구의 장이 인증기관에 발행하는 인정서는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1) 인정범위
- (2) GLOBALG.A.P. IFA 기준 문서와 버전
- (3) 해당되는 경우, 옵션 1에 대한 제한사항
- (4) 해당되는 경우, 지역적인 제한사항

6. 인정기준

6.1 GLOBALG.A.P. IFA 인증스킴의 인정에 대한 기준은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AS-R-002)”에 따르며, 추가적으로 GLOBALG.A.P. IFA General Regulations Part III(인증기관 및 인정 규칙) 3 ~ 6항에 명시된 다음의 인증기관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GLOBALG.A.P. IFA General Regulations Part III

인증기관 및 인정 규칙

3. 운영요구사항(Operational Requirements)

3.1 일반요구사항

3.2 인증기관 직원의 교육 및 자격

3.3 GLOBALG.A.P.과의 인증 관련 정보 교환

3.4 인증기관의 독립성, 공정성, 기밀유지, 무결성

4. 생산자 등록 및 수락(Producer Registration and Acceptance)

4.1 일반요구사항

4.2 생산자의 등록

5. 심사 프로세스(Assessment Process)

5.1 옵션 1 생산자

5.2 정기검사(Announced Inspections)

5.3 사후관리 보상 프로그램(Unannounced Reward Program)

5.4 옵션 2 생산자단체 및 옵션 1 품질경영시스템 적용 복수생산지 생산자

5.5 사후관리 검사 및 심사(Unannounced Inspections and Audits)

5.6 취급시설 검사(Inspections of Product Handling Units)

6. 인증 프로세스(Certification Process)

6.1 일반요구사항

6.2 심사 기간

6.3 생산자 부적격 및 제재(Producer Non-conformance and Sanctions)

6.4 인증서 발행 요구사항(Paper Certificate Requirements)

7. 인정신청

- 7.1 GLOBALG.A.P. IFA 인증스킴에 대한 신청기관의 인정신청절차는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KAS-R-003)”에 따르며 추가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 7.2 ISO/IEC 17065에 따라 공인제품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지 않거나 중도 해지한 신청기관은 글로벌갭 옵션 1에 대해서만 인정신청 할 수 있으며, ISO/IEC 17065에 따른 공인제품인증기관 유지 기관이 글로벌갭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를 신청한 경우, 글로벌갭 옵션 2 범위까지 신청할 수 있다.
- 7.3 신청기관은 GLOBALG.A.P.의 IFA 인증기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제공한 모든 문서와 기록물(GLOBALG.A.P. Extranet의 인증기관 정보 포함)에 대해 KAS 사무국이 검토하도록 허가해야 한다.
- 7.4 인정기구의 장은 신청기관의 제출서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정신청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7.5 인정기구의 인정과 연계된 GLOBALG.A.P. 인증기관 승인 단계에 대한 절차는 GLOBALG.A.P. IFA General Regulations Part III 2항(인증기관 승인 절차)에 명시된 절차를 따른다.

8. 평가반 구성

8.1 GLOBALG.A.P. IFA 인증스킴에 대한 평가사 선정 및 구성은 “KAS 공인 제품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KAS-R-003)”에 따른다.

9. 평가일수의 산정

9.1 GLOBALG.A.P. IFA 인증스킴에 대한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에 소요되는 평가인원 및 일수는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KAS-R-003)”에 따른다.

10. 인증기관의 인증표본 및 소재지 표본 추출

10.1 GLOBALG.A.P. IFA 인증스킴에 대한 신청기관의 인증표본 및 소재지 표본 추출은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KAS-R-003)”에 따른다.

11. 평가업무절차

11.1 GLOBALG.A.P. IFA 인증스킴에 대한 평가업무절차는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KAS-R-003)”에 따르며, 추가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11.2 GLOBALG.A.P. IFA 인증스킴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평가사는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KAS-R-003)”의 별지 제6호 서식과 본 추가기술요건의 별지 제2호 서식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야 한다.

- 11.3 인정기구는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GLOBALG.A.P. Extranet의 인증기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11.4 현장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사는 해당되는 경우, GLOBALG.A.P.의 인증 무결성 프로그램의 감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한다.
- 11.5 현장입회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사는 인증기관의 심사원이 GLOBAL G.A.P. IFA General Regulation에 따라 심사를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심사 범위에 해당하는 GLOBALG.A.P. CPCC(Control Points and Compliance Criteria)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2. 평가보고서

- 12.1 GLOBALG.A.P. IFA 인증스킴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 절차는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KAS-R-003)”에 따른다.

13. 시정조치 보고 및 확인평가

- 13.1 GLOBALG.A.P. IFA 인증스킴에 대한 시정조치 보고 및 확인평가는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KAS-R-003)”에 따른다.

1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11월 1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GLOBALG.A.P. IFA 인증기관 인정신청 확인서 (CONFIRMATION OF APPLICATION FOR ACCREDITATION)

기관명 :

(Name of Certification Body)

법인등록번호 :

(Registration Number of Corporation)

법인주소 :

(Address of Corporation)

사업장 소재지 :

(Address of Certification Office)

인정신청분야 및 범위 :

(Application Scope of Accreditation)

(예시) GLOBALG.A.P. Integrated Farm Assurance (Option 1,2)

Fruit and Vegetable

기준문서 :

(Normative Documents)

(예시) GLOBALG.A.P. Integrated Farm Assurance General Regulations, V x.x (20xx.xx)

상기 기관이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라 한국제품인정기구의 KS Q ISO/IEC 17065 인정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제품인정기구장

[별지 제2호 서식]

GLOBALG.A.P. IFA 추가기술요건 평가 점검표

기관명 :

평가구분 및 평가일자 : 신규/확대/변경/정기검사 (00.00.00~00.00.00)

평가항목		평가결과		
GLOBALG.A.P. IFA General Regulation Part III	KS Q ISO/IEC 17065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3.2 직원의 교육 및 자격 a)항 - 스킴관리자(인증책임자)의 적격성 •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 • 승인된 하나 이상의 하위범위에 대한 검사원(inspector)자격 취득 • 정규직일 것 • GLOBALG.A.P. 업무의 책임 (GLOBALG.A.P. 사무국 요구사항 대응 및 GLOBALG.A.P. 제공사항/소식 공유 담당업무 포함)	6.1 인증기관 인원			
3.2 직원의 교육 및 자격 b)항, 부속서 III.1,2 - 검사원(inspector) 및 심사원(auditor)의 자격요건 [별표 1 참조] 1) 학력 및 경력 • 관련분야 학력, 경력) 2) 필수교육 • 검사원/선임심사원 교육, 식품안전, 위생, GLOBALG.A.P 교육 이수 3) 인증기관의 검사원/심사원 신청자에 대한 작업수행도 평가 • 참관, 입회심사 등 4) 검사원/심사원 역량 유지 • 지속적인 심사수행, 입회심사 등	6.2 평가를 위한 자원			
3.4 인증기관의 독립성, 공정성, 기밀유지, 무결성 - 인증기관의 운영 및 인증활동의 독립성 및 공정성 절차 운영 - 기밀유지에 관한 절차 운영 - 검사원/심사원이 4년 연속으로 한 업체를 검사 /심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 운영	4.2 공정성 관리 4.5 기밀유지 7.1 일반사항			

평가항목		평가결과		
GLOBALG.A.P. IFA General Regulation Part III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4. 생산자 등록 및 수락	KS Q ISO/IEC 17065			
- 신청 생산자의 정보에 대한 GLOBALG.A.P. 데이터베이스 등록, 업데이트, 수수료 공지 등 절차 보유	7.2 신청 7.3 신청검토			
5. 심사 프로세스				
- 옵션 1, 2에 대한 정기심사, 사후관리 심사 절차 보유 및 운영	7.4 평가 7.9 사후관리			
6. 인증프로세스				
6.1 일반사항				
- 인증결정권자, 인증위원회 중 1인 이상 심사원 자격(IFA GR Part III의 부속서 III.2) 충족 여부				
-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미준수 사항 식별 (CPCC에 대한 부적합)/부적합(GLOBALG.A.P. Certification Rule에 대한 부적합)사항 식별	7.5 검토 7.6 인증 의사결정 7.7 인증문서			
- 인증기관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할 항목	7.11 인증의 만료, 축소, 정지 또는 취소			
- 심사체크리스트의 이용여부				
6.2 심사기간				
- 심사보고서에 심사 기간에 대한 기록 포함				
- 각 범위별 충분한 심사를 위한 최소 심사 기간 설정				
6.3 제품 부적합 및 처분				
- 부적합사항에 대한 제재(경고/정지/취소) 및 시정조치 평가에 따른 해제				
6.4 인증서 발행 요구사항				
- GLOBALG.A.P. 최신 인증서 양식 사용여부	7.7 인증문서			
- 인증과 관련된 생산자, 생산지 및 취급시설 정보 제공여부				
9. 무결성 프로그램				
- 해당되는 경우, GLOBALG.A.P. 무결성 프로그램 (GLOBALG.A.P. 자체 평가프로그램)에서 확인된 인증기관의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 및 적절성	8.7 시정조치			

[별표 1]

글로벌갭 인증검사원(Inspector)/심사원(Auditor) 자격요건

글로벌갭 인증심사원은 검사원(Inspector) 및 심사원(Auditor)로 구분되며, 각각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AS-R-002)” [별표5] 인증기관 직원의 자격기준에 추가적으로 GLOBALG.A.P. IFA General Regulation III 부속서 1,2에 따른 다음 요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검사원(Inspector)/심사원(Auditor)의 업무범위

- 1.1 검사원은 옵션 1 생산자의 GLOBALG.A.P. CPCC 준수여부를 검사하며, 품질경영시스템 심사는 제외한다.
- 1.2 심사원은 옵션 1 생산자 및 옵션 2 생산자단체의 GLOBALG.A.P. CPCC 준수에 대한 검사와 품질경영시스템을 심사한다.

2. 학력 및 경력

검사원 및 심사원의 학력 및 경력은 다음의 1), 2)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 2.1 해당되는 인증범위(농작물/축산물/수산양식물)와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및 최소 3년의 농업분야(가족농업 가능) 경력 보유
- 2.2 식품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및 해당되는 인증범위(농작물/축산물/수산양식물)의 농장 및 현장 실무직 또는 기술분야 생산관리직으로 최소 4년의 경력 보유
- 2.3 관련 전공이 아니다 하더라도, 인증범위 관련 과목이수 입증을 통해 학력을 인정할 수 있다. 과목이수는 정규과정이 아니더라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수료증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기술 및 자격

검사원/심사원은 기술적 능력 및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3.1 교육 및 심사 경력

- 검사원은 검사(inspection)의 1일 검사실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심사원은 ISO 19011에 기반한 경영시스템 관련 선임심사원 교육을 이수(최소 37시간 이상)하고, 경영시스템(예, ISO 9000, ISO 14000, ISO 22000, OSHAS 18000 등) 또는 BRC 또는 IFS 또는 글로벌갭 옵션2 심사 또는 유럽

- 유기농 생산자단체 심사에 대한 최소 10일의 심사 경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 심사원은 'GLOBALG.A.P. QMS 심사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2 식품안전, G.A.P. 교육 이수

3.2.1 HACCP 관련 정규 교육과정

- 검사원/심사원 자격 부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
- 인증기관에 의한 내부교육 인정가능

3.2.2 식품위생 관련 정규 교육과정

- 검사원/심사원 자격 부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
- * 화훼 및/또는 작물 번식재 분야의 검사원 및 심사원은 해당되지 않음

3.2.3 GLOBALG.A.P. CPCC 온라인 교육

- GLOBALG.A.P. 온라인 교육 이수 및 합격

3.3 의사소통능력

- 해당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 및 전문용어 활용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3.4 인증기관의 검사원/심사원에 대한 작업수행도 평가

- 검사원/심사원 신청자는 자격 범위에 대한 검사 및/또는 심사에 대해 최소 1회 이상 참관하여야 한다.
- 인증기관은 검사원/심사원 후보자에 대해 자격부여 전 최소 1회 이상 입회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5 검사원/심사원의 자격 유지

- 인증기관은 검사원/심사원이 매년 최소 5회 또는 10일의 검사/심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고객이 이를 수행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GLOBALG.A.P. 사무국과 서면협의를 할 수 있다.
- 인증기관은 검사원/심사원에 대해 최대 4년에 1회씩 역량검증을 위한 입회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3.6 검사원/심사원 순환

- 인증기관은 검사원/심사원이 4년 연속으로 한 업체를 검사/심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